

警友夜話 - 3

後 遺 症

전창식 회원 (本誌 논설위원, 극작가)



— 부슬 비, 흡사 오늘의 出處를 슬퍼하거나 하는 듯, 밤새도록 부슬비가 소리 없이 오열하듯 축축이 온 누리를 적시며 밝아오고 있다. 다만 혼을 달래듯 촛불이 힘없이

일렁대고 있을 뿐, 숨이 막히도록 무거운 寂寞만이 흐르고 있다는 게, 새벽의 영안실 모습이다. 弔花도 轉機迄도 없는 허전하고 쓸쓸한 祭床 위에 무표정한 망인의 영정과 검정 띠를 기수에 맨 喪友會旗만이 말없이 조문객을 맞고 있을 뿐이다.

— 인생은 空手來 空手去이니 떠나는 자에게 거 추장스럽고 무거운 부담 없이 훌개분하게 가도록 해 달라. — 는 유언에 따라 조촐하게 꾸었다는 게 상주들의 말이다.

상습적으로 마약 밀매 업을 범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박 형사가 그 조직의 단서를 잡은 것은 한 더위가 숨을 허덕이게 하는 灼熱의 7월 하순 무렵이다.

본시 체력이 강인하고 담력이 대담했던 그는 천신만고 끝에 용의자의 은신처를 탐색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한적한 농촌마을을 번두리에 자리잡은 허름한 외판집으로 용의자를 연행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는 예상되는 저항에 대비해서 차선의 방법까지 준비하는 처벌성을 지니고 대했다. 그러나 그의 면전에 나타난 용의자는 의외롭게도 허약하고 순진스러워 보이긴만 했고, 찾아온 상대가 경찰임을 알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 웃을 갈아입고 나을 테니 잠깐만 기다려 달라. - 는 말을 하며 야릇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상대의 나약한 체구와 순순한 태도에 긴장감을 풀 그는 뒷방마루에 걸터앉으며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느닷없이 뒷방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면서 곤봉을 내리치는 기습을 예상하며 본능적으로 머리를 옆으로 돌렸다. 순간 둔탁한 물체의 타격을 머리에 느끼면서 의식을 잃었다.

頭女가 안면까지 벗겨지는 충상을 입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에는 너무도 처참할 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이 안도감을 갖게 했으나,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겠다는 단서가 불안한 마음의 그림자로 남았다.

동료들의 적개심 어린 활동이 가해자를 검거한 것은 그로부터 4일만의 일이다. 그리고 그는 살인 미수라는 죄명으로 송치 되어 징역형을 언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기에 이른다. 박 형사는 상처가 회복되어 근무에 복귀했으나 체력과 사고력의 퇴행으로 정상적인 수사 활동에 장애를 받는 가운데 정년을 맞아 퇴직했다. 그리고 비탄한 가운데 재활을 위해 노력한 보람도 없이 마침내 부상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유가족의 호곡, 그리고 동료 친지들의 비애 어린 슬픔 속에 유명을 달리한 그의 유골은 이제의 되돌아 올 수 없는 파란의 세계·영원한 無의 영역으로 사라지듯 한 평 넓이도 되지 않는 묘혈 속으로 묻혔다.

그를 타격하고 후유증을 유발케 한 범인이 경축일 特赦로 감형 출감된 것은 그가 永眠에 들기 14일 전의 일이다.

우리는 영원한 警察人

創警 60주년, 元老 警友 초청 간담회



간담회 종료후 경찰청사 앞에서 전현직 警友들이 함께 했다.

경우회 구홍일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 이흥세 前 서장을 비롯한 건국 및 호국의 역할을 담당했던 원로 警友, 각 기능별 모임의 회장단 등 60여명이 지난 6월 22일 創警 60주년을 맞아 허준영 경찰청장의 초청을 받아 경찰청을 방문하고 한국경찰의 발전상에 대한 영상물을 관람하는 한편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을 방문하고 112 신고센터, 교통정보센터,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견학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은 우리 경찰이 回甲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며, 조국공복과 더불어 태어나 6.25 동안, 산업화, 민주화 등 그 아말로 파란만장했던 현대사를 걸어온 지 어느덧 60년이 되었다』면서 『그 시절 과중한 업무와 버텨지 못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건국·구국·호국경찰로서 그리고 봉사경찰로서 맡은 바 직무에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피와 땀이 있

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국가사회의 발전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 청장은 『전체 경찰가족의 숙원인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전 경찰관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율과 분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가치에 부합하고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조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전·현직이 서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과 많은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허 청장은 『퇴직하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제한을 현재의 '20년 이상 재직한 퇴직 경찰관'에서 '6.25 참전경찰관'까지 확대하고, 입원진료비도 30%까지 감면하며 장기적으로는 50%까지 감면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에 국방부장관만이 할

수 있었던 참전사실 인정을 경찰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가오는 경찰의 날에는 많은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전·현직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홍일 경우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창경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일 먼저 건국경찰 선배들을 초청해 준 후 배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우리들의 오랜 숙원인 김·경수사권이 배분되도록 전현직이 하나로 뭉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몇몇 원로 警友들이 경찰발전과 경우회 활성화를 위한 덕담을 나누며 오찬으로 이어져 선 후배 경찰인들이 정담을 나누는 자리로 되었다.



국립묘지 참배 재향경우회는 호국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3일 오전 11시 구홍일 회장, 전직 총수, 중앙회 임원, 서울 경우회 임원 등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탑과 경찰 추훈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했다.

李相斗의 교통상식<38>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권하는 술잔을 계속 거절하다 마지못해 딱 2잔을 마신게 화근이었다.

김대리는 회식 후 관찮겠지 하고 승용차를 운전, 광화문에서 불광동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다.

홍은동 고개를 넘고 있는데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돌진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김대리는 깜짝 놀라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오토바이 옆을 치고 말았다.

승용차는 별로 손상되지 않았으나

화제의 인물

“최상의 서비스로 警友가족 모시겠다” 葬禮事業에 뛰어 든 박창길 회원 (주)국민상조 대표이사 취임



하는 새로운 동반자로서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경남 산청경찰서장을 마지막으로 35년간의 경찰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했던 박창길 회원이 최근 (주)국민상조 대표이사를 맡아 제 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다.

박 회원은 『그동안 경찰에서 경험한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경찰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국민상조는 전국 4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염습은 물론 수의, 상복, 관, 위패, 축문 등 각종 장례용품에서부터 1급 장례사 2명, 장례도우미 2명 등 4명이 장례식 일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故人의 마지막 가는 길을 최고급 캐딜락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운구해 주는 토탈 장례 서비스 회사이다.

박 회원은 최근 경우회와 업무 제휴를 맺고 상조부금 가입회원(회원가족 포함)에게는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장례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상조부금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장례의전 서비스 일체를 제공하는데, 부금 1구좌(매월 1회 2만원씩 총 99회)에 가입후 1회 이상 부금 납부 후에는 1회의 장례의전 서비스를 받게 되며, 언제든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평생 경찰인으로 살아온 내가 경찰관 및 警友님들께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경우회장 추천하는 극빈 회원이나 경찰청장 추천한 순직 경찰관에 한해서 무료 장례의전 서비스 일체를 제공하겠다』는 박 회원.

그는 『장례식은 세상을 떠난 故人에 대한 아쉬움과 석별의 정을 담아 정성으로 치러야 할 중요한 통과의례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비정상적인 관행과 독점적 횡포로 유족을 실망시키는 일이 많은데, 그 동안 쌓은 노하우와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임종에서 시작하여 용품의 공급, 장례식의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논스톱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완비하고 내가족, 내 부모님을 모시듯 장례식의 품격은 높이고 경비는 줄이는 새로운 장례문화의 선구자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상담전화 : 1544-4110)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부상, 피를 흘리고 있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좁은 골목에서 돌진해 나와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회식 때 술 2잔을 마신 게 마음에 걸렸다.

사고 잘못 없어도 환자 두고 뺑소니하면 조치 불이행 과실로 처벌 받아

김대리는 크게 당황 되었으나 사고에는 잘못이 없었니까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 잘못이니 관찮겠지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현장에 둔 채 그대로 가 버렸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2시간쯤 지나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왔다.

사고현장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경

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김대리는 경찰서에 동행,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음주량이 한계수치 이하로 나와 형사입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으로 넘어져 있는데도 환자에 대한 구조조

치 없이 가버렸기 때문에 김대리는 환자에 대한 구조조치 불이행으로 구속되고 말았다.

김대리는 회사와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1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지만 과장 승진 대상에서도 누락되는 불운까지 겪게 되었다.

특별기고



1. 서언

현행의 행정사제도는 일제말기인 1938. 8. 26일 조선총독부령 제178호 “대서업규 제규칙”으로 제정 시행되어 왔고, 67년 5. 16 군사혁명이후 1961년 9월 23일 법률제 727호로 행정서사법으로 제정시행된 지 여인 44년이라는 거의 반세기의 연륜이 지나왔으며, 1995.1.15일 법률제4874호로 구(舊)행정서사법에서 행정사법으로 전면개정된 현행의 행정사법의 모양태와 실태가 겨우 삼척부성의 이러한 법일진대 과연 현 행정사법의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정사의 제도 확립으로 국민의 법적인 편익을 도모해줄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기술하고자 한다.

2. 현행 행정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책

암울했던 지난 30여년간의 군부정권시대를 넘겨 소위 민주화 지방화 시대와 병진하여 정치권력을 비호하고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았던 모든 각계 각층의 낡은 법령과 제도를 새롭게 미주화적인 개혁을 한다고 시작한지가 10여년이 지났다.

특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작금에 광범하게 맞서 거론되고 있는 검찰권과 경찰권의 배분 즉 무소불위(無所不爲)적인 수사권의 독립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양태로 그 가닥이 잡혀질지는 예측불허(豫測不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권력의 균형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서 거의 엇비슷하게 문제이지만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의 법적인 취급업무 범위의 상충 때문에 과연 현행 행정사법이 이래도 법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전국의 6,500여명의 행정사들의 업권보호와 그 권익을 위하여, 그리고 본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건부의 한사람으로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적시해 보고자 한다.

“행정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 이 흥 식 (대한행정사회 중앙회 부회장)

가. 행정사법 제2조(행정사의 업무)와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행정사법 제2조(취급업무) 제1항 1호에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한다.」 「법무사법 제2조(취급업무) 제1항 1호에 법무사는 “검찰청(법원포함)”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한다.」로 법적으로 명문하고 있다.

이에 위의 두가지 법에서 그 취급업무의 상충성 때문에 우리 행정사들은 그 취급업무 범위의 축소 내지는 법무사법 제2조의 위반행위(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처벌조항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특히 본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검찰청의 “취급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2000년 7월 20일자 '99헌마 52호」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사의 취급업무 범위에서의 “행정기관”과 법무사의 취급업무 범위에서의 “검찰청”과 어디까지가 행정기관이며 어디까지가 사법기관인가? 질문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행정국가이다. 그러면서도 검찰청(검찰기관)은 사법부기관인가? 행정기관인가? 검찰청은 행정부처의 일부처인 엄연한 법무부 산하의 행정관청이며, 역시 행정기관이다. 그렇다면 행정사법에서 명시한 “행정기관” 역시 검찰청(경찰서 포함)도 이에 포함됨에도 행정사는 본건의 법무사법 제2조에 의거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고소, 고발장 등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자연법의 논리에 속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사, 법무사 등 모두 함께 똑같은 행정기관인

경찰, 검찰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책이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된다고 본다.

그리고 행정사의 “행정심판청구” 문제 역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무총리실 또는 시도지사의 부설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측에서는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직무) 및 동109조(벌칙)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행정사의 행정심판서 작성에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업무상 상충되는 법률(변호사법, 행정사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에 대하여 결들여서 강조하고자 한다.

나. 행정사법 개정의 시급성

현 행정사법은 1995년 전면개정 전보다도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지난 2002년 1월에 소위 유희화정비안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수 많은 각종 법령 중에서도 유독히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거금 70년이 다되어가는 행정사법 자체를 송두리째 폐지키로 결정하였다. 과연 타당한 일이었는가?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회 집행부의 열화와 같은 재심청구 요청에 의하여 행정사업무 및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조사하여 “행정사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절충한 결과로 2002. 11. 1일에 “행정사자격시험” 실시를 전제로 한 행정사 제도의 존치를 결정하였다.

지난 약 3년여에 걸친 행정사 폐지, 존속 등 갈등의 와중에서 전국의 행정사들은 완전히 사기가 위축되고 실의에 빠져서 휴·폐업자가 속출하고 게다가 작금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엄청난 가계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음은 사실이다.

더욱이 전국의 약 6,500여명의 행정사들 중에서도 약 35%에

해당하는 2,300여명은 모두가 전직 경찰관, 즉 우리를 경우들이다. 연령층으로 보면 65세 이상이 63%를 차지하는 노인들로서 연금제도 혜택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오직 행정사를 유일한 생계수단의 천직으로 알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는 처지이다.

이들은 모두가 참으로 건국, 호국, 조국근대화의 기수요, 역군들이었다.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의 취급업무상의 법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법적인 제약은 현행법 하에서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정부에서도 현행 행정사법 보완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 개정작업이 금방간 정계, 법조계, 학계에서의 연구와 시민단체 참여 등을 통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거쳐서 연내로 국회통과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만 기필코 이번 기회는 행정사법다운 법으로서 타법령에 모호하게 저촉되지 않는 법이 태동되기를 시급히 바라고 기대하는 바이다.

3. 결어

이상에서 현행 행정사법의 모순점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그 이유와 실태를 한두가지 적시하여 보았지만 법무사법도 타법에 저촉연계된 취급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법의 맹점만 탓할 뿐이다. 경찰관서와 검찰관서는 행정기관이면서 그 업무의 성질상으로 보아 사법권적인 조직과 체제로서 그 작용면에서 사법권적인 작용을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다, 검찰기관이다 라고 따지기에 앞서서 행정사, 법무사 모두 함께 각법의 제2조에 명시된 “업무” 범위에서 구분없이 경찰관서나, 검찰관서 모두 행정기관임으로 고소, 고발장 등을 비롯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균형적으로 배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그리함으로써 조만간에 교통정리 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독립 등 권력배분의 차원과도 본제도의 개선이 맞물려져서 집단이거적인 저물질에서 진일보(進一步) 진전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